「2026년 대구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업」

지역기반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공모안내서(재공고)

2026. 5.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Daegu Digital Innovation Promotion Agency

1 사업 목적

■ 지역 가상융합·AI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여 가상융합 산업의 저변 확산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지역기반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협약기간은 사업비 교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대구지역 소재 가상융합 혹은 AI 기술 보유 기업(컨소시엄 구성 가능)

※ 대구지역 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적용

※ 공급기업은 컨소시엄 구성 가능(컨소시엄의 경우 주관은 반드시 소재지가 대구, 참여기업은 무관)

※ 접수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완료 必

■ **(지원규모)**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하,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계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 지원금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실증	과제당 43백만원 이내 × 1건	43백만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구지역 소재 가상융합 혹은 AI 기술 보유 기업(컨소시엄 구성 가능)

○ 대구지역 가상융합·AI 기업(**공급**기업) ↔ 지역특화산업 제조기업 또는 자사 콘텐츠 실증 가능 기업(**수요**기업) 구성으로 지원

구분		자격요건
공급기업	**주관기업(필수)**	-신청 마감일 기준 대구지역 AI/SW/가상융합 중소·중견 기업 (접수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완료 필수) -가상융합 분야 플랫폼/콘텐츠 개발 가능 기업
	참여기업(선택)	-전국 AI/SW/가상융합 중소·중견 기업
수요기업	**수요기업(필수)**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실증: 신청 마감일 기준 대구 소재 내 공급기업 자사 콘텐츠 실증 가능 기업 -실증에 대한 적극 협력 및 장소 제공 필수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주관기관(업), 참여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참여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부적정”기업 3.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나.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라. 기업 채무로 소송 등의 기업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 중이거나 민형사 상 사건으로 인해 민원발생 중인 경우 4.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5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6.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한 중복성 사전 검토 후 제출(필수)**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협약기간은 사업비 교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	내용
자율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실증	기 개발된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 및 실증

■ (지원규모)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하,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계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 지원금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실증	과제당 43백만원 이내 × 1건	43백만원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총사업비(100%)	지원금 (총사업비 75% 이하)	기업부담금	
			현물	현금(최소 10%)
예시	57,600,000	43,000,000	13,100,000	1,500,000

※ 총 사업비 및 기업 현금·현물 부담금 산출 세부 내용

- 지원금: 43,000,000원(157,600,000원 × 74.6%)
- 자부담금: 14,600,000원(57,600,000원 × 25.4%), 자부담금 중 현금은 1,500,000원(14,600,000 × 10%)

■ (지원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조건	■ NIPA 인프라(상암, 판교),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 1회 이상 활용 ■ 대구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인프라 2회 이상 활용 ■ 사업비 관리 교육 참여 권고
인력채용	■ 신규인력 3명 이상 채용 의무(일용직 제외, 4대 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제출) - 본 과제 참여 인건비 참여율이 계상된 자에 한해, 지원과제별 3명 이상 채용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인력부터 인정,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준)
사업화매출	■ 과제 직·간접 매출 5억원 이상 달성 -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 과제 관련 직·간접 매출 총액 5억원 이상 달성
보험증권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험기간 : 협약체결일 ~ 2027. 01. 31.(협약기간 + 60일) - 보험금액 : 총 지원금 100% - 제출시기 : 1차 지원금 신청시
성과조사	■ 과제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특허 및 인증 등 지원기관(DIP)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지원분야별 예시>

1. 가상융합기술 예시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현실과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기술
- 현실 환경이나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해당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운용하여 실제 환경의 운영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을 포함

※ 예시: 디지털트윈, XR, VR, AR, 3D 정합 및 공간 매핑 등

2. 가상융합 콘텐츠 고도화 예시

- 예시①: VR 기반 산업 안전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구분	내용
공급기업	VR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가상융합 기업
수요기업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 운영 기업
개발내용	기 개발된 VR 안전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요기업의 작업환경, 설비 구조, 실제 사고사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교육 시나리오를 고도화
실증내용	수요기업의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신규 작업자 안전교육 및 정기 교육에 활용하고 교육 효과 및 활용성을 검증

※ 서비스 예시는 참고 사례로, 사업 목표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자유롭게 제안 가능

4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서면평가		현장점검		발표평가		지원대상 확정
과제 중복성, 회계점검, 지원자격 등 평가	▶	참여인력, 개발환경, 보유기술 등 평가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체결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DIP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면평가

- 평 가 자 : 지원사업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회계사 등)
- 평가항목 :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회계점검 등
- 평가기준(※ 공모안내서 3p 사전 지원제외 대상 참고)

구분	평가내용
지원자격	- 사업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 기본 신청자격 적정여부(NTIS 검토 등)
신청서류	-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및 누락여부 등
회계점검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 이외 사전지원 제외 검토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과제 중복성	- 과제 중복성 여부(NTIS 검증)

○ 현장평가

- 점 검 자 : 지원사업 담당자, 외부전문가
- 점검항목 : 참여인력, 시설 및 개발환경, 보유기술 등
- 점검기준 : 점검결과 1개 이상 ‘부’ 판정일 경우 선정대상 제외

구 분	점 검 내 용	여	부
참여인력	- 제출서류 기준 참여인력 일치 여부		
시설 및 개발환경	- 제출서류 기준 기업 소재지 주소 일치 여부		
	- 제출서류 기준 개발환경(장비 및 SW 등) 일치 여부		
보유기술	- 제출서류 기준 보유기술 일치 여부		
종 합 결 과			

※ 점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표평가

- 평 가 자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자체 평가지표 등

- 평가기준 : 총괄책임자 PT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산술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산술평균이 동일한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 기대효과, 성과지표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지표	사업추진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 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 조직 및 운영체계 전문성	10	30
			사업추진 수행역량	○ 제안기업의 전담인력 확보 ○ 전담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사업추진 인프라 확보 ○ 주관기업의 재무건전성	10	
			기업 성장가능성	○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 객관지표점수표 기준**	10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기획의 충실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사업비전 등) ○ 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	10	40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 사업추진 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	10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 핵심기술 보유여부 -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 대체 가능성 및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 ○ 상용화 가능성 -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	15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 산출근거의 구체성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업)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 민간현금 확보 노력	5	
	기대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산업 공헌도	○ 지역산업 활성화 노력 및 실적 - 지원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향상도 - 고용 창출 계획 적정성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공헌도	10	10
필수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10	20
자율지표			○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10	
합 계					100	

〈객관지표점수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객관지표	기업규모 및 신용정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증가 :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확인 : 증빙가능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산출하되,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	증가 (2)	유지 (1)	감소 (0)
		○ 과제 제출일 기준, 직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가입자명부(제출일자 기준)	100%이상 (2)	~90%이상 (1)	90%미만 (0)
		○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간) : 정부과제 수행(지원금 1억원 이상, 동일과제 내용 제외)	5건 이상 (2)	3건 이상 (1)	3건 미만 (0)
		○ 직전년도 수출 건수	2건 이상 (2)	1건 이상 (1)	1건 미만 (0)
		○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연구개발인력/종사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확인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	30%이상 (2)	10%이상 ~30%미만 (1)	10%미만 (0)

※ 과제수행 총괄책임자가 PT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제 수행 참여인력으로 대체 가능 (지원기관과 사전협의 및 공문제출 필요)
※ 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및 협약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기업 최종 선정
※ 선정기업이 없거나 최종 선정규모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진행

5 접수방법 및 절차

■ **(공고기간)** 2026. 5. 18.(월) ~ 5. 28.(목) 16:00까지

■ **(접수기간)** 2026. 5. 18.(월) ~ 5. 28.(목) 16:00까지

■ **(접수방법) e-mail 접수 후 원본서류 제출(방문/우편)**

○ 메일주소: cy1@dip.or.kr

○ 서류 제출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601호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e-mail 접수 후 원본서류 제출 필수)

○ 이메일 접수 후, 사업 담당자 유선전화를 통한 접수번호 발급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추가, 보완, 반환 불가

○ 접수기간 내 접수된 기업이 없는 경우, 공고기간 연장 및 추가모집 진행

■ **(문의처)**

○ 문의처: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X기술지원팀, 053-655-5630 / cy1@dip.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제출대상	
		서류목록	양식 제공	주관	참여 (필요시)
계획서		사업계획서 직인날인본(PDF파일&한글파일) 각 1부	-	○	x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	○	○
	2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서식2	○	○
	3	수요처 확약서	서식3	○	x
	4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서식4	○	○
	5	참여의사 확인·확약서	서식5	○	○
	6	NTIS 차별성검토(舊 유사과제) 검색결과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차별성검토 검색결과 제출	서식6	○	x
	7	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재정보 검색결과 제출	서식7	○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제출	-	○	○
	2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제출	-	○	○
	3	3년간('23~25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회계사 공증서류) ※'25년 재무제표가 발행 전일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추후 제출 필수) ※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 산정 후 제출	-	○	○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공고 내 발급분) ※ 직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 확인용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7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 확인용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제출.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	-	○	○
참고 (해당시)	1	직전년도 수출 관련 증빙자료 ※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	○	○
	2	지원사업 협약서 등 ※ 지원금 1억원 이상 해당내역	-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주관기관이 일괄 제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최종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유의사항 〉

-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수행 중 주관기업의 타 지자체 본사 이전 시 진흥원 및 지자체의 지역 내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취지를 위배, 사업포기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회계정산수수료 비용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이후 사업비 지급 예정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 사업비 등 조정 가능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 (추진절차)

준비 단계	과제 모집 공고	‘26년 5월 중	▪ 공고문 게시(DIP 홈페이지)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과제신청서 접수	‘26년 5월 중	▪ e-mail 접수 후 원본제출(방문/우편)
	서면평가	‘26년 6월 초	▪ 중복성 및 적격성 검토
	현장점검 및 발표평가	‘26년 6월 초	▪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6년 6월 중	▪ 수정사업계획서 등 관련 협약 서류 제출 ▪ 협약체결 및 지원금(1차) 교부
	과제 수행	‘26년 6~12월	▪ 수행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중간점검	‘26년 8~9월	▪ 과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점검 ▪ 중간(현장)점검 ▪ 지원금(2차) 교부
	결과 평가	‘26년 12월	▪ 과제 결과보고서 등 제출 ▪ 과제수행 최종평가
정산	사업비 정산	‘26년 12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6 유의사항

○ 관련 규정

- ICT기금사업 규정 및 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등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 일반사항

- 동일한 내용으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업(정부 및 공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사업비 관리

- 수행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카드 발급하여 사용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민간부담금 우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업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위탁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
- 사업기간 종료 후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등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이자발생액 포함하여 전액 반납)